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216 호		
건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조례(안)		
제출자	서초구청장	제출년월일	1994. 12. 1.
검토위원명	이 휘남	전문위원	(署名)

1. 검토내용

가. 제정사유

- (1) 서울시가 교통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각구에 공히 시달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대책』과 『구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의 취지에 부합되는 『서초구 시내버스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
- (2) 동 위원회에 현재까지는 고정된 2명의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의 안건에 관련된 동 출신 구의회 의원을 모두 다 위원에 포함시켜 출신 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시내버스 조정위원회의 기능
- (2) 위원회의 구성
- (3) 위원의 임기
- (4) 회의의 소집
- (5)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에 관한 사항

다. 관련법규(별첨)

- (1) 운일 33120-717('92. 4. 21) 시내버스노선조정 및 노선 위반단속업무 개선대책 시달
- (2)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의 발의)
-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안의 제출 발의)
- (4) 서울특별시 버스노선 조정심의회 규정

또는 사업자의 교통수요 등 현황조사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조정사항 등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심의배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긴급 또는 임시교통 정리를 위하여 버스노선의 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조정사항
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 조정사항
3. 교통신호 체계변동 등에 따른 조정사항
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심의회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위원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8 조(서면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 교통수요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1.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집단 민원사항
2.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3.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신설·폐쇄 등 교통여건의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

제 9 조(회의록작성)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검토의견

가. 검토내용

- (1) 본 조례 제정(안)은 서초구 관내의 시내버스노선 조정과 마을버스 관련 사항을 심의 함으로써 버스노선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개선 처리하기 위하여 서초구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코자 하는 것임
- (2) 본(안)은 서울시가 시달한 관련 지침을 기초로 이호혁 의원외 11인이 작성·발의한 것으로서 이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와 같음
 -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노선조정으로 시민편의 증진
 - 경미한 노선의 수시조정으로 주민이해 반영
 - 자치구 책임하의 교통행정주진으로 지역교통 대책의 원활화
 - 마을버스 한정 면허처리 심사에 주민 및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의 의견 수렴

나. 검토사항

- (1)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그 의결사항을 관련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버스노선 조정인가시 반영되도록 한다.

 - 기·종점을 관할하는 구 관내 일부노선의 변경사항
 - 차고지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및 변경사항
 - 회차지점의 변경사항
 - 지하철 개통등에 따른 경미한 노선의 변경사항
 -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함
 - 구청장을 위원장, 부구청장을 부위원장, 지역교통과장과 간사, 지역교통 계장을 서기로 함
 - 위원에는 각국장 5인, 관할경찰서 교통계장, 해당지역 등장 및 심의안건에 관련된 등 출신 구의회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현존하는 「서초구 시내버스 노선조정협의회」와 「서초구 한정 면허처리 심사위원회」는 본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폐지함

다.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서울시의 광역 교통측면에서 교통수요의 변화에 대처하는 시내버스노선 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버스노선 조정심의회의 규정」을 개정해 가면서 까지 이미 각 구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서초구는 「노선조정협의회」로 되어 있음)
- 구 노선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서울시에 노선 조정을 건의하도록 하였고 그 건의내용이 서울시의 노선 조정인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 노선 조정위원회」는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었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비록 사안별로 해당 등장과 구의원을 시한부 위원으로 위촉할 때 번거로움이 있고, 위원회 확대로 인한 운영난등 애로가 있겠지만, 이는 최대한의 주민편의를 위하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두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1) 서울시지침

서 울 특 별 시

(관 인 생 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02) 774-2465~7 / 전송 774-6763

문서번호 문일 33120-717

시행일자 1992.04.21

수신 수신처 참조

선정		시	
접	인사 시간	92.4.22	결 무주차장
수	번호	15-21	재 차량대장
	처리과		공 차량교환
	담당자		담당자

제목 :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대책 시답 2주차 대장

- 교통수요 변화에 즉시 대처하고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대책을 시답합니다.
- 구청장은 구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의거 업무 주전에 만전을 기하 바람.

첨부 : 1.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단속업무 개선대책 1부.

2. ○○ 구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운영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승인 : 서구 1-22

3. 개선대책

구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교통수요 변화에 즉시 대처하는 노선조정 제도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심의회 규정" 을 개정, 구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 구 노선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노선조정 전의시 서면 심의를 통하여 노선조정 인가
- 심의 및 조정 범위

시	자 치 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2개구이상 결친 노선의 조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 기·종점을 관할하는 구 관내 일부노선의 변경
<input type="checkbox"/> ○ 장거리 노선의 단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변경
<input type="checkbox"/> ○ 노선의 폐지 및 신설	<input type="checkbox"/> ○ 회차지점 변경
<input type="checkbox"/> ○ 각종공사 등으로 인한 임시 운행 명령	
<input type="checkbox"/> ○ 지하철 개통 등에 따른 노선의 전면조정	<input type="checkbox"/> ○ 기타 경미한 노선의 변경

시장

○ 노선조정위원회 구성

○ 시 - 현행과 동일

○ 자치구

- 명 청 : ○○구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10~15인

. 위 원 장 : 구청장

. 부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각 국장 5인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해당지역 동장

위원장 위촉인사 약간명

간 사 : 지역교통과장

○ 노선조정 절차

○ 시 - 현행과 동일 시장

○ 자치구

노선조정 요구 - 민원인, 각종단체



지역 주민 및 관련 업체 의견 수렴



구 노선조정 위원회 회의



노선조정 건의 - 관할 구청장



노선조정 인가 - 시

□ 노선 단속체제 강화

○ 노선위반 단속을 구청에서 실시

- 위반사례 조사 및 처분요청 - 구
- 행정처분 - 시

※ 장기적으로 노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 - 교통부에 처분권 재위임 승인 요청

○ 단속시기

- 정기 단속 : 매분기별 (연 4회) - 전 노선 조사 단속
- 수시 단속 : 민원발생 및 필요시 - 해당노선 단속

□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처분 개선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교통부령) 개정건의

- 업체별 과징금 부과 → 위반운행차량 대수별 과징금 부과
- 과징금액의 현실화 → 상향조정

시장

4. 예상효과

-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노선조정 - 시민편의 증진
- 경미한 노선의 수시조정 - 주민 이해 반영
- 노선조정과 위반업체 단속의 효율성 증대 - 위반사례 감소
- 자치구 책임하의 교통행정 추진 - 지역교통대책의 원활화

15. 행정자치부

- 관할구 관내 버스노선의 일부 조정은 구 시내버스 노선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시에 건의
- 기존 구 한정면허 처리 심사위원회는 본 위원회로 대체하고 마을버스 면허처리 심사도 본 위원회에서 실시
- 본 지침은 '92. 5. 1 일부터 시행함.

△ 시장

(2) 지방자치법

제 58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발의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 18조 (의안의 제출,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 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1994. 3. 15]
[총령 제793호 전문개정]

● 서울특별시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편과 노선조정 업무의 공정 정화한 처리를 위하여 버스노선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2. 서울특별시 해당구청장
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운영이사
4.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5. 시정개발연구원 교통연구부장
6.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실장
7.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8. 소비자보호단체의 장, 시민대표 및 조합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자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통할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수1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내버스계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제1호의 노선개편계획에 의한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등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교통국장은 심의에 앞서 노선개편 계획안 또는 노선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부의하고 동 의결에 따라 확정 또는 시행 하여야 하며, 노선조정의 경우 운행 개시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시민을 위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노선조정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필요시 당해지역 구청장의 의견과 버스조합